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7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박덕흠 • 이헌승 • 박정하

고동진 · 김성원 · 최은석

김소희 • 윤영석 • 박상웅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 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	
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
	<u>수 지원사업</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